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 공고번호 제2023-01호

# 2023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
# 「지역 맞춤형 노년문화활동 지원」 경남지역 사업 공모

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는 경남 중심의 어르신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사회적 활동을 통해 개인의 보람과 성취를 느끼며, 유쾌한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「지역 맞춤형 노년문화활동 지원_경남지역」 공모사업을 지원합니다.

이와 관련하여 「지역 맞춤형 노년문화활동 지원_경남지역」 사업 공모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역량을 갖춘 문화시설(지방문화원) 및 문화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2023. 5. 8.

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장

## 공모개요

ㅇ 공 모 명: 지역 맞춤형 노년문화활동 지원_경남지역

ㅇ 사업기간: 2023년 5월~11월

| 사업주제 | 접수기간 | 사업수행기간 |
|---|---|---|
| 갱상도 할매・할배들의 “단디! 다안디” 유튜브 | 5.15.(월) 09:00부터<br>5.19.(금) 18:00까지 | 2023년 5월~11월 |

※ 동일문화권의 경상도이지만 지역에 따라 문화의 차이가 있으며 어르신들이 평생을 살아온 이야기와 특색 있는 전통 먹거리, 볼거리, 즐길거리를 어르신들의 시각에서 유튜브 제작

ㅇ 지원규모: 8개 프로그램, 과제당 900만원 지원

※ 수행기관(단체)당 최대 1개만 선정을 원칙으로 함

ㅇ 지원대상: 경남도내 문화시설(지방문화원) 및 문화예술단체, 노인복지관 등

※ 문화시설 범위: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[별표] 및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항 관련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[별첨 참조]

※ 문화예술단체: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

※ 노인복지관: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름

※ 사회적 기업 우선 고려

**<지원제외대상>**

- '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' 에 해당되는 시설 및 단체
- 학원이나 교습소, 또는 종교단체
- 상업적 활동을 주로 하는 영리위주의 기관 및 단체

※ 사업 선정 이후 해당사항 발견 시 선정취소 및 사업비 환수 조치

ㅇ 공모내용: 동일문화권의 경상도이지만 지역에 따라 문화의 차이가 있으며 어르신들이 평생을 살아온 이야기와 특색있는 전통 먹거리, 볼거리, 즐길 거리를 어르신들의 시각에서 유튜브 제작

ㅇ 공고기간: 2023.5.8.(월)~5.19.(금)까지 (총 12일간)

ㅇ 접수기간: 2023.5.15.(월)~5.19.(금) 18:00까지 (※마감시간 엄수)

ㅇ 접수방법: 온라인 접수 - 구글폼(https://forms.gle/K9c6gKHSz5brrUrt5)

※ 이메일 및 우편, 현장방문 접수 불가

ㅇ 제출서류: 사업지원신청서, 단체등록증,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

※ 단체등록증: 고유번호증, 사업자등록증, 박물관등록증, 도서관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

ㅇ 심사방법: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발표심사

ㅇ 결과발표: **5월 26일(금) 예정**

※ 경남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(http://gyeongnam.kccf.or.kr/) (공지사항)

ㅇ 문의처: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 사업팀(055-231-3771)

○ 추진일정

| 구 분 | 내 용 |
|---|---|
| 사업공고 및 공모접수 | ○ 공고기간: 5.8.(월)~5.19.(금)<br>※ 경남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 http://gyeongnam.kccf.or.kr/ (공지사항)<br>○ **접수기간: 5.15.(월)~5.19.(금) 18:00까지**<br>※ 접수방법: 온라인 접수 구글폼(https://forms.gle/K9c6gKHSz5brrUrt5) |
| ⇓ | |
| 접수마감 | ○ 마감일시: 5.19.(금) 18:00까지 (※마감시간 엄수) |
| ⇓ | |
| 공모심사<br>(5월 4주 예정) | ○ 서류 및 발표(PPT) 심사<br>5월 24일(수) 14:00~18:00 예정 (장소: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) |
| ⇓ | |
| 결과발표<br>(5월 4주 예정) | ○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<br>※ http://gyeongnam.kccf.or.kr/ (공지사항)<br>5월 26일(금) 예정 |
| ⇓ | |
| 1차 공동연수<br>(5월 5주 예정) | ○ 수행단체 워크숍<br>사업운영 안내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 교육<br>※ 대면으로 진행(선정단체에 한함. 5.31.(수) 예정) |
| ⇓ | |
| 1차 교부 신청<br>(6월 1주 예정) | ○ 교부신청서 및 수정사업계획서 e나라도움 접수 |
| ⇓ | |
| 2차 공동연수<br>1차 교부<br>(6월 2주 예정) | ○ 수행단체 워크숍 (2차) 6월 29일(목) 예정<br>○ 국고보조금 교부(50%) 및 결정 통보 |
| ⇓ | |
| 3차 공동연수<br>추진상황보고서 제출<br>(8월 3주 예정) | ○ 수행단체 워크숍 (3차) 7월 27일(목) 예정<br>○ 사업추진상황보고서(추진현황, 보조금집행현황 등) |
| ⇓ | |
| 4차 공동연수<br>2차 교부<br>(8월 4주 예정) | ○ 수행단체 워크숍 (4차) 8월 24일(목) 예정<br>○ 국고보조금 교부(50%) 및 결정 통보 |
| ⇓ | |
| 5차 공동연수<br>(9월 4주 예정)<br>실버문화페스티벌 개최<br>(10월 4주 예정) | ○ 수행단체 워크숍 (5차) 9월 21일(목) 예정<br>○ 지역형 실버문화페스티벌 의무참여<br>(10.26.(목),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(예정))<br>- 공연・전시・체험 등<br>○ 한국문화원연합회 주관 실버문화페스티벌 별도공지 |
| ⇓ | |
| 6차 공동연수<br>(11월 3주 예정) | ○ 수행단체 워크숍 (6차) 11월 16일(목) 예정<br>○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관련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<br>(e나라도움) 교육 등 |
| ⇓ | |
| 사업마감<br>(11월 4주 예정) | ○ 정산 및 실적 보고서 e나라도움 접수 |

※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.

# 목 차

1. 사업개요 ····· 1

2. 공모요강 ····· 3

3. 심사 및 선정 ····· 6

4. 공모신청 시 유의사항 ····· 9

5. 예산편성 기준 ····· 10

[별첨](공통) 문화시설 범위 ····· 13

<지역 맞춤형 노년문화활동 지원_경남지역 공모 소개>

경남지역은 도시보다 농촌, 어촌, 산촌 등 다양한 시골문화가 숨 쉬고 있으며, 도시에 비해 젊은 계층보다 지역사와 함께 해 온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콘텐츠 제작이 용이합니다. 코로나 이후 메타시대가 오면서 유튜버나 넷플릭스와 같은 인터넷을 통한 OTT방식으로 미디어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습니다. 이에 본 사업은 참신한 아이디어나 콘텐츠를 활용한 유튜브로 세대가 공감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

# 1 사업개요

## ❑ 사업개요

ㅇ 사 업 명: 지역 맞춤형 노년문화활동 지원_경남지역

ㅇ 사업기간: 2023년 5월~11월

ㅇ 사업주제: 갱상도 할매・할배들의 “단디! 다안디” 유튜브
- 지역 어르신들이 전하는 우리 동네 이야기

ㅇ 주요내용
- 동일문화권의 경상도이지만 지역에 따라 문화의 차이가 있으며 어르신들이 평생을 살아온 이야기와 특색있는 전통 먹거리, 볼거리, 즐길 거리를 어르신들의 시각에서 유튜브 제작

ㅇ 사업목표
- 경남 각 지역의 문화재, 지역특산물, 관광명소, 풍습, 전통 먹거리, 찾아가는 마을기록 등을 어르신들이 직접 체험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제작
- 동영상 유튜브, 유튜브 shorts를 제작하는데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어르신들이 대본 없이 리얼 다큐 방식으로 제작
- TV 예능프로 “꽃보다 할배” 처럼 자신이 태어난 고장의 명소를 여행하며 소개하고, 직접 지역 전통 음식을 만들어 축제에서 홍보하는 등 어르신들이 주인공이 되어 유튜브 제작

- 각 지역의 유튜버 할매·할배들의 지역자랑 배틀, 사투리 배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경남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소통의 장 마련

○ 지원대상: 경남도내 문화시설(지방문화원 포함) 및 문화예술단체, 노인복지관

※ e나라도움 '보조금전용 신용카드' 발급 불가단체 지원 제한

○ 주최: 문화체육관광부·한국문화원연합회

○ 주관: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·수행단체명

## ❑ 주요내용

| 사업주제 | 주요내용 |
|---|---|
| 갱상도 할매·할배들의 "단디! 다안디" 유튜브 | 문화재, 지역특산물, 관광지, 풍습, 전통 먹거리, 찾아가는 마을기록 등을 유튜브로 제작 |

※ 동일문화권의 경상도이지만 지역에 따라 문화의 차이가 있으며 어르신들이 평생을 살아온 이야기와 특색 있는 전통 먹거리, 볼거리, 즐길 거리를 어르신들의 시각에서 유튜브 제작

## ❑ 지원 규모

(단위: 천원)

| 사업주제 | 지원개수 | 지원액 |
|---|---|---|
| 갱상도 할매·할배들의 "단디! 다안디" 유튜브 | 8개팀 | 72,000원 |

※ 선정개수 및 예산은 사업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

## 2 공모요강

### ❑ 지역 맞춤형 노년문화활동 지원_경남지역

ㅇ 사업목적

- 어르신들이 평생을 살아온 이야기와 특색있는 전통 먹거리, 볼거리, 즐길거리 등을 어르신들의 시각에서 유튜브를 제작하여 사라져가는 지역문화 보존 및 계승

ㅇ 지원자격: 경남도내 문화시설(지방문화원 포함) 및 문화예술단체, 노인복지관

※ 문화예술단체는 공고일(2023.5.8.) 이전 설립된 단체

※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필수

(문화예술단체의 경우 관련 서류(붙임. 지원신청서 양식 참고) 제출

ㅇ 지원개수: 8개팀

ㅇ 지원금액: 프로그램 당 900만원

ㅇ 지원방식: 단년도 지원

ㅇ 참여대상: 60세 이상 어르신 ※ '중년(50~59세)' 은 20%미만 참여 가능

ㅇ 권장사항: <문화품앗이>를 통한 문화자원봉사 활동

ㅇ 사업방향

- 경남 각 지역의 문화재, 지역특산물, 관광명소, 풍습, 전통 먹거리, 찾아가는 마을기록 등을 어르신들이 직접 체험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제작
- 동영상 유튜브, 유튜브 shorts를 제작하는데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어르신들이 대본 없이 리얼 다큐 방식으로 제작

ㅇ 사업내용

- 경상도는 동일 문화권이지만 지역에 따라 문화의 차이가 있으며, 어르신들이 살아 온 이야기와 특색 있는 전통 먹거리, 볼거리, 즐길 거리를 어르신들의 시각에서 유튜브 제작

○ 지원조건

| 예산구간 | 기본조건 | | |
|---|---|---|---|
| | 참여 인원 | 활동 회차 | 활동시수 |
| 900만원 | 15명 이상 | 15회 이상 | 30~45시수 이상 |

※ 활동시수는 강의, 동아리 모임, 관련 워크숍, 공연(발표회 및 전시 등) 등 모두 포함

○ 예산항목 편성 내용

| 목 | 세목 | 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운영비<br>(210) | 일반수용비<br>(01) | - 강사사례비(퍼실리테이터 포함)<br>· 주강사 1명, 보조강사 1명 이내의 강사비<br>※ 강사변경 불가<br>· 특별강의 강사비<br>- 활동매니저(1인에 한함) 사례비<br>- 행사진행 보조인력 활용비<br>- 정산검사비<br>· 추후 연합회 지정 회계법인에 지급<br>- 사업진행 필요 공통 홍보물 제작 | |
| | 임차료<br>(07) | - 행사 장소 임차<br>※ 교육 공간 임차비 지원 불가<br>- 음향 및 조명 장비 등 대여<br>- 의상 및 소품 대여<br>- 버스임차 등 | |
| 여비<br>(220) | 여비<br>(01) | - 공동연수 참석 및 관계자 현장출장 등 여비<br>· 연합회 주최 공동연수 6회 편성 포함 | |
| 업무<br>추진비<br>(240) | 사업추진비<br>(01) | - 사업 진행 시 필요한 식·간식비 | 10% 이하 |

※ 경남지역형 실버문화페스티벌 참가 경비 국고보조금 편성 필수

※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 주관워크숍(6회 예정) 단체 당 1명 참석에 대한 여비 편성

## ❑ 권장사항

○ 농촌, 초고령층(75세 이상 인구 多)의 어르신들을 위해 **찾아가는 마을단위 (경로당, 마을복지관 등)**의 노년문화 유튜브 제작

○ 경남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(농촌, 어촌, 산촌), 물리적 환경 등 **지역문화 자원을 활용**한 유튜브 제작

## ❑ 선정단체 의무사항

○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을 통한 사업비 집행·관리·정산 필수

- 지원금 교부 신청, 교부금 집행 및 관리, 정산 등 국고보조금 관련 모든 사항은 e나라도움을 통해 진행하며, 지원금 집행 시 해당 증빙서류 일체를 e나라도움에 업로드해야 함
- 지원금 전액 예탁계좌 예치 방식으로 교부되며, 지원금 집행 시 보조금전용 신용카드 사용 혹은 계좌이체로만 진행

  ※ 체크카드 사용 및 현금거래 불가
- e나라도움 미사용 또는 오용 시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할 수 있음

## 3 심사 및 선정

❑ **심사방법**

○ 심사절차

- 서류심사 및 PPT 발표

※ 사업담당자 PPT 발표(5분) 및 질의응답(5분)

○ 심사위원 :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 5인

❑ **심사기준** : 사업 우수성, 사업 적합성 등 평가

| 평가항목 | 내 용 |
|---|---|
| **사업계획의 완성도** | ◦ 유튜버 사업 콘텐츠 및 교류 프로그램의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|
| **네트워크 역량** | ◦ 지역 어르신과 협업 정도 |
| **사업수행 역량** | ◦ 사업수행 및 관리 역량(성과, 리스크, 홍보) |
| **지속가능성** | ◦ 중장기적 계획을 통한 사업의 지속가능성 |

## ❑ 지원신청 제한조건

ㅇ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」, 「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」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등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

**※ 지원신청 제한**
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[시행 2022.2.18.(법률 제18425호)]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해당하는 단체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[시행 2022.7.1.(법률 제18465호)]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
- 국고 및 지역문화재단,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표절(등 저작권침해), 임금체불, 성폭행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단체
  ※ 「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」[2022.5.] 제10조 1항 제1호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문화체육관광부, 지역문화진흥원, 유관부처 및 기관, 지자체 등 중복지원 불가
  ※ 위,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, 교부 결정 후 사업 수행 기간 중이라도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(진흥원의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 사실 적발 시 단체에게 책임이 있음)

**※ 교부결정의 취소**
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[시행 2022.2.18.(법률 제18425호)] 제30조(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) 및 「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」[2022.5.] 제10조(보조금 교부조건)에 1항에 해당하는 경우,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
- 교부 결정 후, 지원사업의 수행 기간 중이라도 기금 부정수급자로 판명되거나, 그 밖의 결격 기준이 모호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3인 이상의 심의위원이 사업 선정 취소 판단 여부를 결정하여 후속 절차를 처리할 수 있음.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[시행 2022.2.18.(법률 제18425호)] 제21조(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)에 따라 교부 결정 후에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.

## ❑ 선정관련 유의사항

ㅇ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기재사항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

ㅇ 기재사항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선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

ㅇ 신청 시, 상호확인 가능한 첨부(증빙)자료는 필히 제출해야 하며, 미첨부시 인정 안 됨

ㅇ 선정 이후 사업계획서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지원신청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축소되거나 일부 내용이 본 사업의 목적과 공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,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 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

ㅇ 본 사업은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」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으로 선정 이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보조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

산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, 「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」, 「지역맞춤형 노년문화활동 지원 운영매뉴얼」 등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

ㅇ 선정단체는 연합회가 승인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반드시 협의해야 함

ㅇ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성희롱·성폭력 관련 서약내용 위반 등 사업 배제 및 취소사유가 발견될 경우 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

## ❑ 선정단체 의무 이행사항

- 「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」개정안에 의거 예술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납부 및 피보험자격신고를 이행하여야 함

-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(프리랜서 등 포함)에 대해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을 이행하고 이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

| 「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」[2022.5.] 제10조(보조금 교부조건) |
|---|
| 3. 보조사업자는「고용보험법」및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**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 및 피보험자격 신고**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,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사실<br>4.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(프리랜서 등 포함)에 대해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<br>나.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3조 및 제13조의2,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31조 및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른 **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.** 다만 1인 보조사업자이거나, 일회성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함. |

# 4 공모신청 시 유의사항

## ❑ 첨부파일 제출

○ 제시된 파일명으로 저장하여 제출

| 제출목록 | | 제출 파일명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 | 지원신청서 | 지원신청서_기관(단체)명 | pdf 파일 제출 |
| 2 | 단체등록증 | 단체등록증_기관(단체)명 | |
| 3 | 개인정보동의서 | 개인정보동의서_기관(단체)명 | |
| 4 | 장소확인서 | 장소확인서_기관(단체)명 | |

※ 수행기관(단체)당 최대 1개의 프로그램 신청 및 선정을 원칙으로 함

## ❑ 공모신청 방법

○ 접수방법: 온라인 접수 - 구글폼(https://forms.gle/K9c6gKHSz5brrUrt5)

※ 이메일 및 우편, 방문 접수 불가

○ 접수기간: 2023.5.15.(월) 09:00~5.19.(금) 18:00까지(마감시간 엄수)

# 5 예산편성 기준

※ 참여단체별 적절한 기준 근거를 제시한 뒤 예산편성.

단, 제시된 비목/세목 외 타 비목/세목 편성 불가

<table>
<tr><th>목</th><th>세목</th><th>산정기준 및 단가</th></tr>
<tr><td>운영비<br>(210)</td><td>일반<br>수용비<br>(01)</td><td>

□ 개인 및 단체 사례비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세부 내용</th><th>금액(원/1시간 기준)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강사비</td><td>주강사(1일 최대 3시간 이내)</td><td>43,000</td></tr>
<tr><td>보조강사(1일 최대 3시간 이내)</td><td>22,000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특강비</td><td>대학 총학장 및 주요 기관장급,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</td><td>250,000</td></tr>
<tr><td>대학 부교수급 이상, 주요기관 부장급 이상 또는 책임급 등</td><td>150,000</td></tr>
<tr><td>대학전임강사 이상, 주요기관 과장급 이상 또는 선임급 등</td><td>100,000</td></tr>
<tr><td>행사 인건비</td><td>행사 진행 인력(1인, 1일, 1회 기준)<br>※ 일회성으로 행사 진행 시, 단순스탭의 경우 책정 가능<br>(1일 8시간 기준, 최대 76,960원)</td><td>9,620</td></tr>
<tr><td>회의참석비</td><td>1일 2시간 기준(2시간 초과시, 시간당 5만원 지급/ 1일 최대 20만원)<br>※ 전문가 자문 및 관계자 라운드테이블 등 회의 참석비<br>※ 참여기관, 단체 간 교류 활동 시 사례비 지급 불가</td><td>150,000</td></tr>
<tr><td>사례비</td><td>공연팀 출연료 등</td><td>사전 협의</td></tr>
</table>

* 강사비는 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할 경우에만 편성(1일 1회 최대 3시간까지 강사비 지급 가능/ 현장학습 포함)
* 공모지원 시설 대표 또는 임직원 강사비 지급 불가
* 보조강사의 경우 활동내용 및 참여자 등을 고려하여 회차당 최대 1인 이내만 가능
* 특강의 경우, 1일 1회, 2시간까지 가능, 문화원 임직원이 무보수 명예직일 경우 2회에 한해 특강비 지급 가능 (단, 프로그램 관련 내용의 강의에 한함)
* 특강은 일회성의 특별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(동일 강사의 특강은 2회 이내로 제한함)

□ 강사교통비

ㅇ 관외: 강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교육장소 간 거리 기준

- 대중 교통 실비 지급(영수증 제출 필수)
- 강사 자차 운영시 아래와 같이 유류비 산식에 의해 지급(단, 왕복 30km 미만 지역의 경우 지급 불가)

<유류비 산출 지급 기준> [왕복거리(km)×유가÷연비]

- 왕복거리(km)
  · 출발지와 출장지 간 거리,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거리 계산
  ※ 민간(네이버지도, 카카오맵 등)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 활용
- 유가
  ·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 기준 유가
  ※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(www.opinet.co.kr)에 고시된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의 유가(휘발유 차량은 보통 휘발유,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, LPG 차량은 자동차용 부탄)을 적용
- 연비
  · 휘발유 13.30(km/ℓ), 경유14.30(km/ℓ), LPG-9.77(km/ℓ)

※ 「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」(인사혁신처예규 제132호, 2022.1.18.) 적용

※ 평균차령(8년)을 고려하여 2010연식 차량의 평균연비(한국에너지공단 통계) 적용

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목</th><th>세목</th><th>산정기준 및 단가</th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
※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실비지급(영수증 제출 필수)<br>
ㅇ 관내(같은 시・군・구인 경우): 교통비 지급 불가<br>
□ 활동매니저 비용<br>
ㅇ 회차당 기본 50,000원, 2시간 초과 이후 시간당 10,000원 지급
<table>
<tr><th>활동 시간</th><th>금액(원)</th></tr>
<tr><td>기본(2시간)</td><td>50,000</td></tr>
<tr><td>3시간</td><td>60,000</td></tr>
<tr><td>4시간</td><td>70,000</td></tr>
<tr><td>5시간</td><td>80,000</td></tr>
</table>
※ 동아리형 활동의 경우 인정(단, 예술강사 배치 불가)<br>
※ 세부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배치 가능. 단, 명확한 역할, 결과물 필요<br>
※ 공모지원 시설 대표 또는 임직원에게 지급 불가<br>
※ 활동 회차에 한하여 1일 1회 최대 5시간(80,000원)까지 지급 가능<br>
※ 동일인이 강사(특강강사 포함)와 활동매니저를 동시에 담당 불가
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
□ 지역 네트워크 구성 관련 운영 비용(회의비 등)<br>
□ 보험(참가 어르신 가입): 예산범위 내 보험가입 권장<br>
□ 공통홍보물(포스터, 현수막, 배너 등) 제작<br>
□ 사업 진행을 위한 소모성 재료 구입비<br>
※ 자산성 물품(악기, 의상 등) 구입 불가<br>
※ 수리비(조율비) 및 세탁비 등 불가<br>
□ 교재 또는 자료집 제작<br>
※ 사업결과물 형태의 자료집 제작은 국고지원액의 <u>최대 10% 범위 내</u>에 집행<br>
(단, 동사업 연차를 고려, 단년도 결과자료집 제작은 지양. 연합회 협의 필요)<br>
□ 행정잡비: 소모성 사무용품(국고지원액의 <u>최대 5% 범위 )</u><br>
※ 외장하드, 카메라 메모리 등은 구입 불가<br>
※ 카드사용내역 SMS 사용 수수료 불가<br>
□ 예술인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<br>
ㅇ 사업주(단체), 예술인이 각각 보수액의 0.7%를 부담하며, 이때 사업주 부담금은 본 사업예산에서 편성 가능(예술인 개인 부담금은 사례비에서 원천징수)<br>
※ 자세한 내용은 ‘한국예술인복지재단’ http://www.kawf.kr 참고<br>
□ 정산검사비: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검사 실시 ※ 향후 기준금액 변경될 수 있음
<table>
<tr><th>기준금액</th><th>수수료</th></tr>
<tr><td>700~15백만원 미만</td><td>226,000원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</td><td>임차료<br>(07)</td><td>
□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장소 임차 등<br>
※ 예산편성 시, 상세 산출내역 작성 필요
</td></tr>
<tr><td></td><td>차량비<br>(10)</td><td>
□ 차량 유류비(국고지원액의 <u>최대 2% 범위 )</u><br>
ㅇ <유류비 산출 지급 기준> 동일 적용<br>
※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실비지급(영수증 제출 필수)<br>
※ 주차비 등은 지급 불가<br>
※ 차량대여비는 임차료로 책정
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목</th><th>세목</th><th>산정기준 및 단가</th></tr>
<tr><td>여<br>비<br>(220)</td><td>국내<br>여비<br>(01)</td><td>□ 여비<br>ㅇ 실무자 공동연수, 관계자 현장 출장 등 여비<br>ㅇ 숙식 제공 행사, 답사 등에 참석할 경우 숙박비, 식비 책정 불가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내역</th><th>지급 단가(1일)</th><th>비고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관내출장</td><td>4시간 미만</td><td>10,000원</td><td rowspan="2"></td></tr>
<tr><td>4시간 이상</td><td>20,000원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관외출장</td><td>교통비</td><td>실비 (고속버스/KTX 등)</td><td>- 택시 이용 불가</td></tr>
<tr><td>숙박비</td><td>ㅇ 실비(상한액 범위 내)<br>- 서울시: 100,000원<br>- 광역시: 80,000원<br>- 그 외 지역: 70,000원</td><td>- 세종시, 제주도 ‘그 외 지역’에 해당</td></tr>
<tr><td>식비</td><td>25,000원</td><td></td></tr>
<tr><td>일비</td><td>25,000원</td><td>- 관차/자차 이용 시 50% 지급</td></tr>
</table>
※ 왕복 2km 이내 근거리 출장의 경우 별도 관내 여비 지급하지 않음<br>ㅇ 자차 이용, 관외 출장 시 <유류비 산출 지급 기준> 동일 적용<br>※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실비지급(영수증 제출 필수)<br>※ 주차비 등은 지급 불가<br>※ 출장 시 자차 이용 지양</td></tr>
<tr><td>업무<br>추진비<br>(240)</td><td>사업<br>추진비<br>(01)</td><td>□ 회의 다과비 및 식비: 1인 최대 20,000원<br>ㅇ 식비, 간식비 합계액(사업추진비 총액)은 국고지원액의 최대 10% 범위 내 집행 (회의 식비 포함)<br>※ 자문회의, 지역협의체 회의, 간담회 등 행사 다과비<br>※ 회의내용, 일시, 장소, 참여자 수를 포함한 회의록 필수 제출</td></tr>
<tr><td>기<br>타</td><td>편성<br>지침</td><td>ㅇ 항목명칭은 위에서 제시된 항목 외 편성 불가<br>ㅇ 예비비 등 포괄적인 예산편성 불가<br>ㅇ 시혜성 물품 구입 불가(강사, 수강생 사례성 선물용품, 문화상품권 등)<br>ㅇ 노래방, 온천장(대중목욕탕 포함), 관광·레저 등의 경비 불가<br>ㅇ 기자재 구입 및 대여 관련하여 최대한 지자체, 관련단체 요청 및 지역 간 공유시설물 활용</td></tr>
</table>

## 별첨 〔공통〕 문화시설 범위

**문화시설의 상세 분류**

(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별표1 관련)(개정 2019.4.16.)

1. 공연시설
   가. 공연장: 「공연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(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)
      1) 종합공연장: 시・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
      2) 일반공연장: 시・군・구 문화예술회관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
      3) 소공연장: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
   나. 영화상영관: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
      1)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
      2)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 상영장
   다. 야외음악당 등: 연주・연극・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「공연법」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
2. 전시시설
   가. 박물관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
   나. 미술관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
   다. 화랑: 회화・서예・사진・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・매매하는 시설
   라. 조각공원: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
3. 도서시설
   가. 도서관: 「도서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
   나. 작은도서관: 「도서관법」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
4. 지역문화활동시설
   가. 문화의 집: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
   나. 삭제 <2019. 4. 16.>
   다. 문화체육센터: 지역주민의 문화・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
   라. 청소년활동시설: 「청소년기본법」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
5. 문화 보급・전수시설
   가. 지방문화원: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
   나. 국악원: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
   다. 전수회관: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・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
6. 종합시설: 제1호가목, 나목 또는 다목의 시설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복합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
7. 삭제 <2019. 4. 16.>

##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

(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항 관련)(시행 2018.3.9.)

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생활문화를 위하여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다음 시설을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생활문화시설로 본다.

1. 생활문화센터 :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는 문화시설

2. 지역영상미디어센터 : 지역주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·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는 시설

3. 지역서점 :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(서점 전용면적의 1/10)과 설비를 갖추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의 독서동아리 운영, 저자 초청 특강, 전시 및 공연 등 문화행사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서점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서점

부칙 <제2018-16호, 2018. 3. 9.>

① (시행일)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재검토기한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